

#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 두 번째 이야기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Institutes  
such as KIRA\_The Second Story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지난번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지방건축사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사회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축사회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아래에서는 다른 협회 또는 조합들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사협회 또는 건축사회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텐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처럼,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액수 또한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 주요 유형사례 1 : 가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소속회원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 통보한 행위(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들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 부산광역시가스판매협동조합이 소속조합원에게 판매가격표를 배포한 행위(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두264 판결)
-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조합 등이 관할지역의 보험차량 정비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하여 받기로 결의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누2948 판결)
-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 학교급식용 조리기구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부산지역 구성사업자들에게 계약단가 이하의 금액으로 응찰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한 행위(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098 판결)

## 주요 유형사례 2 :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

-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약국 휴업 및 폐업행위(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909 판결), 참고로 이러한 행위는 아래의 3유형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음
- 대전광역시자동차매매조합이 신규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자동차매매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98누14084 판결)
-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가 구성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의 고철업 참여를 방해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전기로 업체에 대하여 납품을 중단하도록 결의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9. 10. 29. 선고 99누6332 판결)

## 주요 유형사례 3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행위(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휴무를 강제하도록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9579 판결)
- 대구유치원연합회가 원아모집과 관련한 홍보방법과 시기를 제한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 한국결혼상담소협회가 휴무일의 준수 및 협회차원에서 하는 캠페인에의 참여를 강제한 행위(대법원 1999. 12. 13. 선고 99두8626 판결)
- 울산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사회를 통해 중차심의제를 운용하기로 결의하고 재재를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604 판결) ■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가승무정 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